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호(2007.7.12.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.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11일
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)

지 구 명	유 형	위 치		면 적(㎡)		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기정	증감	변경	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종로구 평동 164 일대	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	200,065.5	감)32,192.0	167,873.5	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·6존치관리구역 제척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 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 -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계		돈의문 1		돈의문 2		돈의문 3		비고
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
합 계	160,150.4	100.0	144,504.6	100.0	6,801.4	100.0	8,844.4	100.0	

구 분		계		돈의문 1		돈의문 2		돈의문 3		비고
	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
택지 (획지)	계	112,323.7	70.1	100,412.8	69.5	5,510.1	81.0	6,400.8	72.4	
	주택 용지	95,657.4	59.7	95,657.4	66.2	-	-	-	-	
	종교 시설	1,671.2	1.0	1,671.2	1.2	-	-	-	-	
	상업 업무	14,995.1	9.4	3,084.2	2.1	5,510.1	81.0	6,400.8	72.4	
정 비 기 반 시 설 등	소계	47,826.7	29.9	44,091.8	30.5	1,291.3	19.0	2,443.6	27.6	
	공원	7,068.3	4.4	6,234.3	4.3	834.0	12.3	-	-	
	녹지	1,044.3	0.6	1,044.3	0.7	-	-	-	-	
	도로	27,033.2	16.9	24,255.5	16.8	457.3	6.7	2,320.4	26.2	
	공공 공지	123.2	0.1	-	0.0	-	-	123.2	1.4	
	광장	594.5	0.4	594.5	0.4	-	-	-	-	
	공공 청사	2,920.7	1.8	2,920.7	2.0	-	-	-	-	
	문화 시설	9,042.5	5.7	9,042.5	6.3	-	-	-	-	

※ 200,065.5㎡(지구면적) - 32,192㎡(돈의문4,5,6존치지역) - 7,723.1㎡(돈의문1구역내 존치건물) = 160,150.4㎡

• 촉진구역(돈의문1,2,3구역) 토지이용계획 변경없는 돈의문4,5,6존치지역 지구 제척

- 2)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- 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- 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- 5) 교통계획(변경없음)
- 6) 경관계획(변경없음)
- 7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	구역명	면 적(㎡)			사업방식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계			200,065.5	감) 32,192.0	167,873.5		
돈의문	촉진구역	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	152,227.7	－	152,227.7	도시환경 정비사업	지구제척
		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	6,801.4	－	6,801.4		
		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	8,844.4	－	8,844.4		
	존치정비구역	돈의문4존치정비구역	12,720.0	감) 12,720.0	－		
돈의문	존치관리구역	돈의문5존치관리구역	16,617.0	감) 16,617.0	－	지구단위 계획구역	지구제척
		돈의문6존치관리구역	2,855.0	감) 2,855.0	－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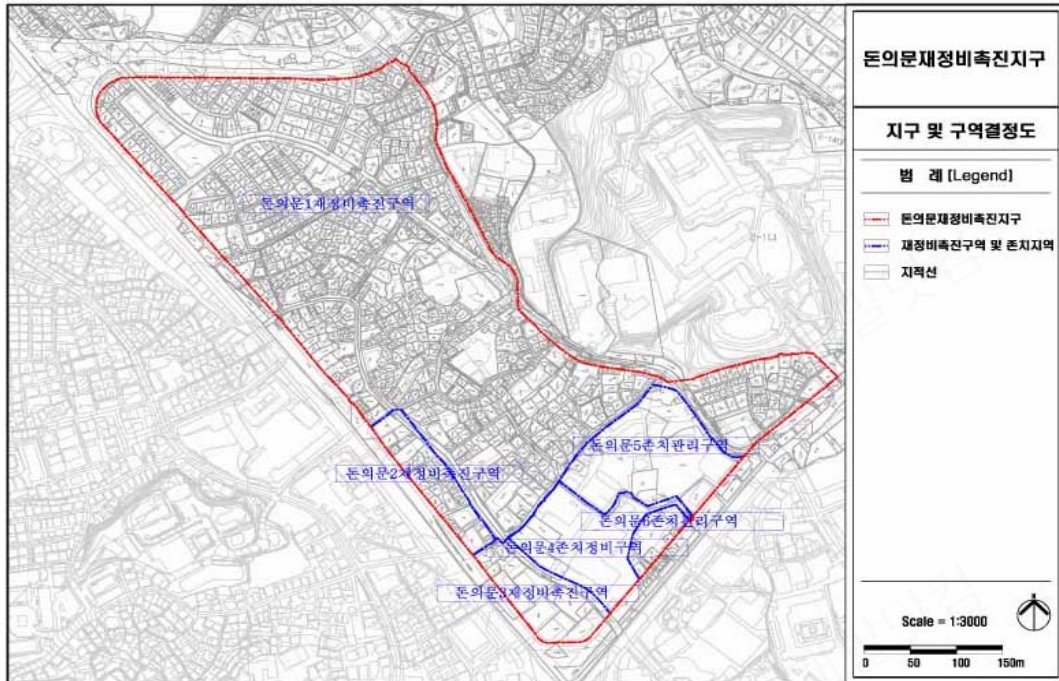
- 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- 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없음)
- 12)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(해당없음)
- 13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- 14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해당없음)
- 15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없음)
- 16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
 - (1) 돈의문1·2·3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5.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·6존치관리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: 변경없음
6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

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19),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9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7. 지형도면의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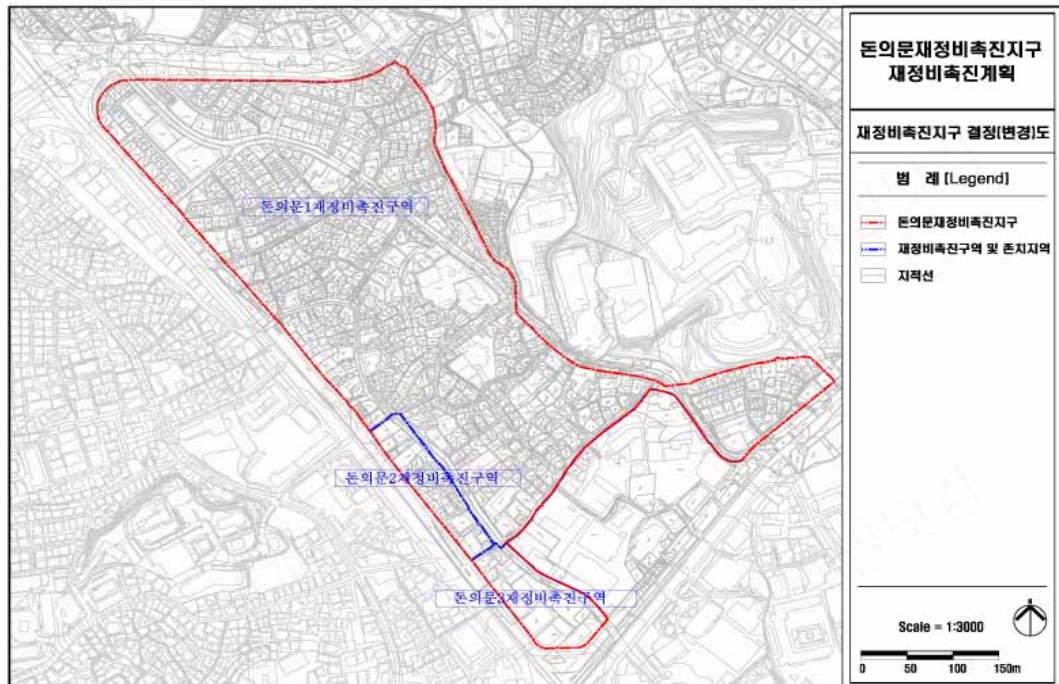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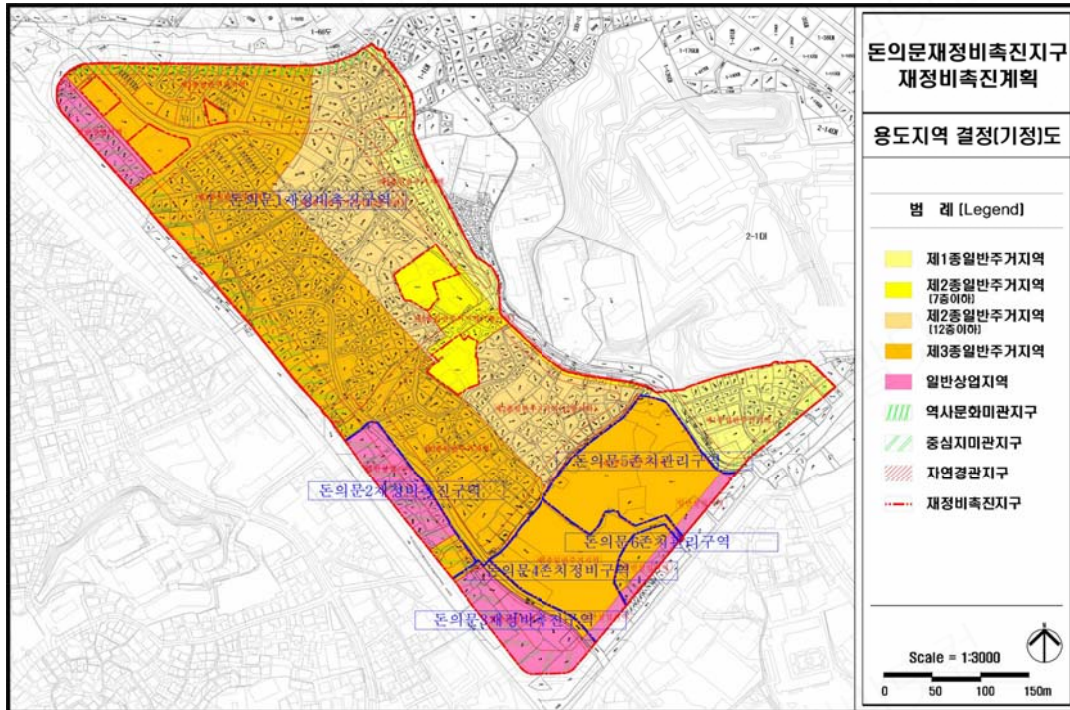
■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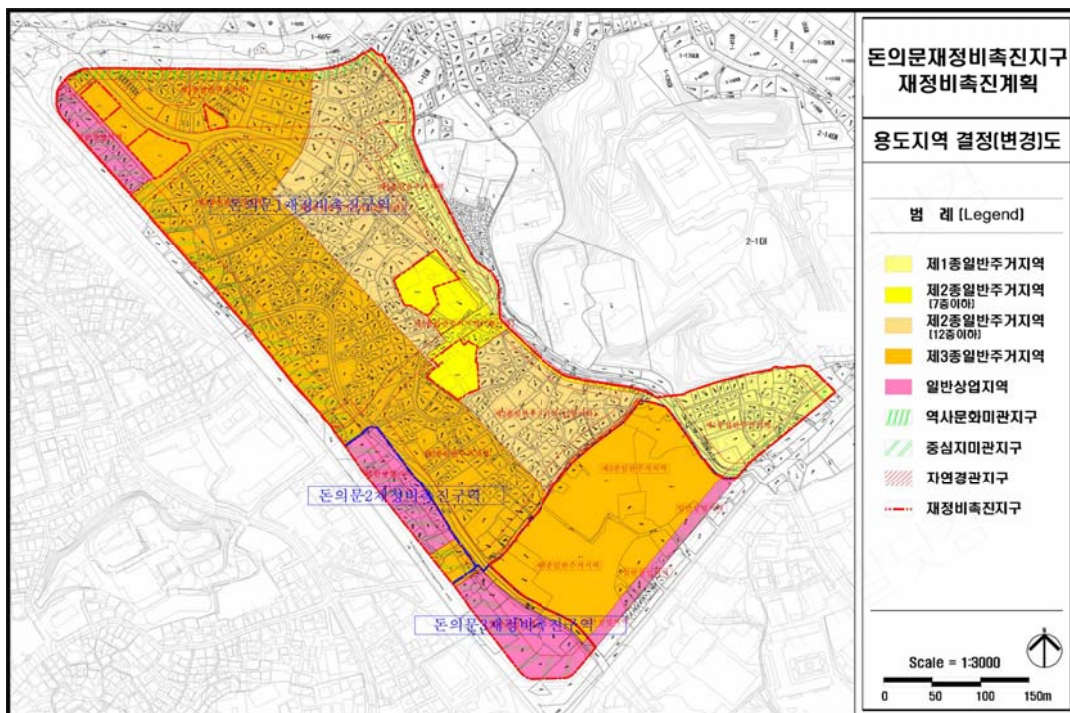
■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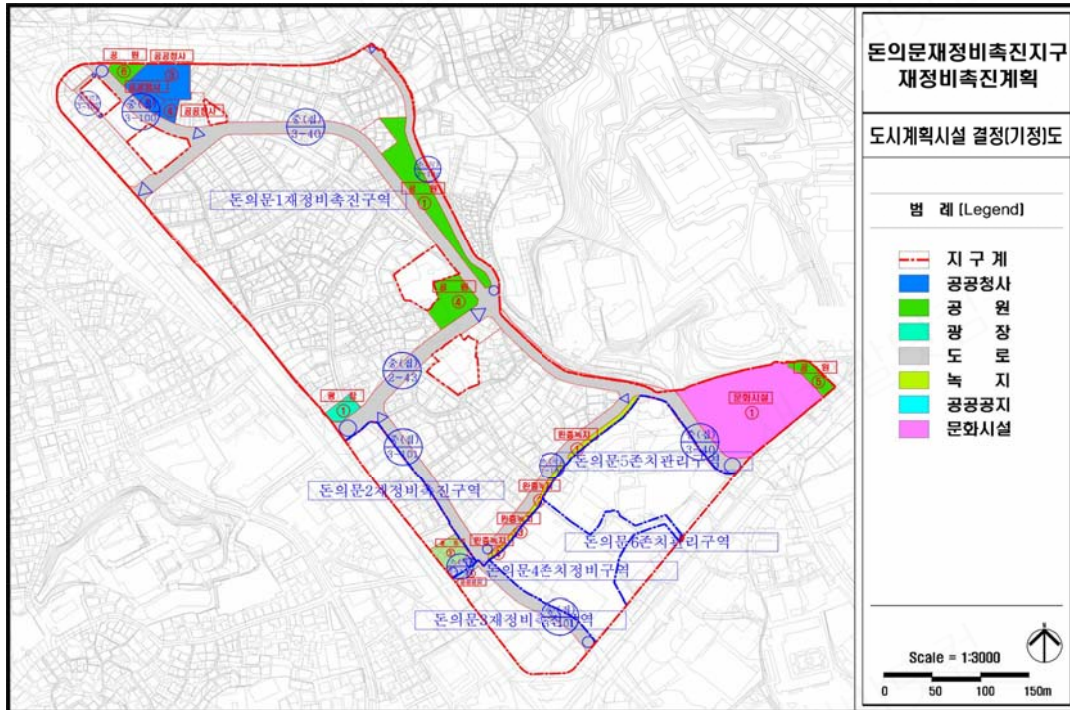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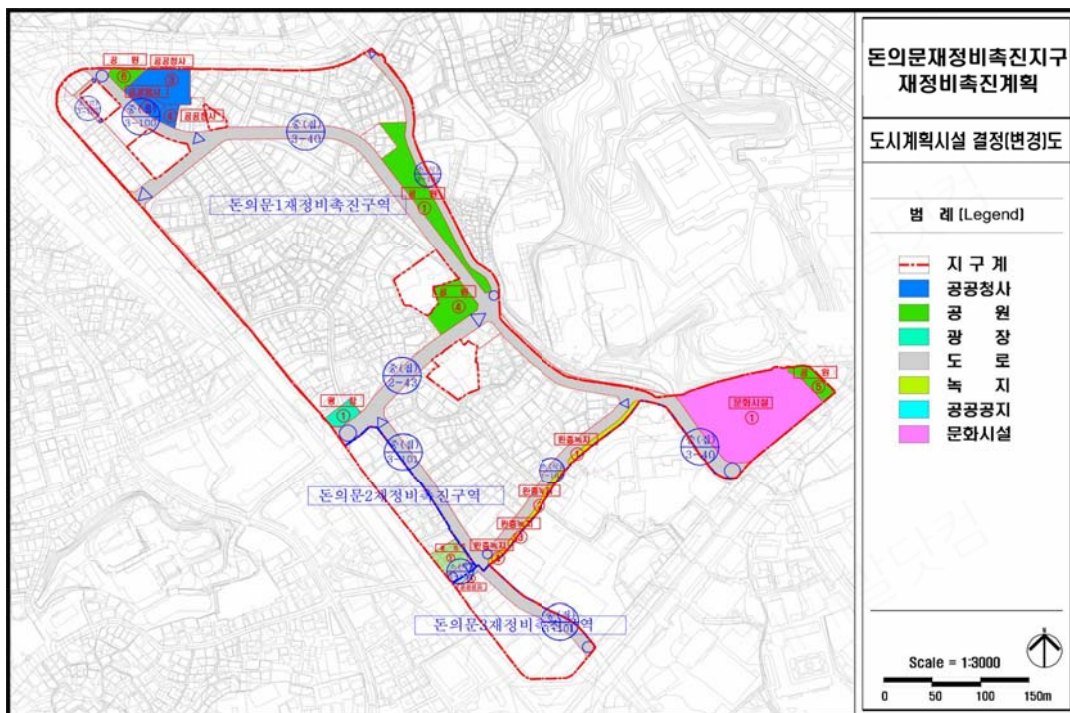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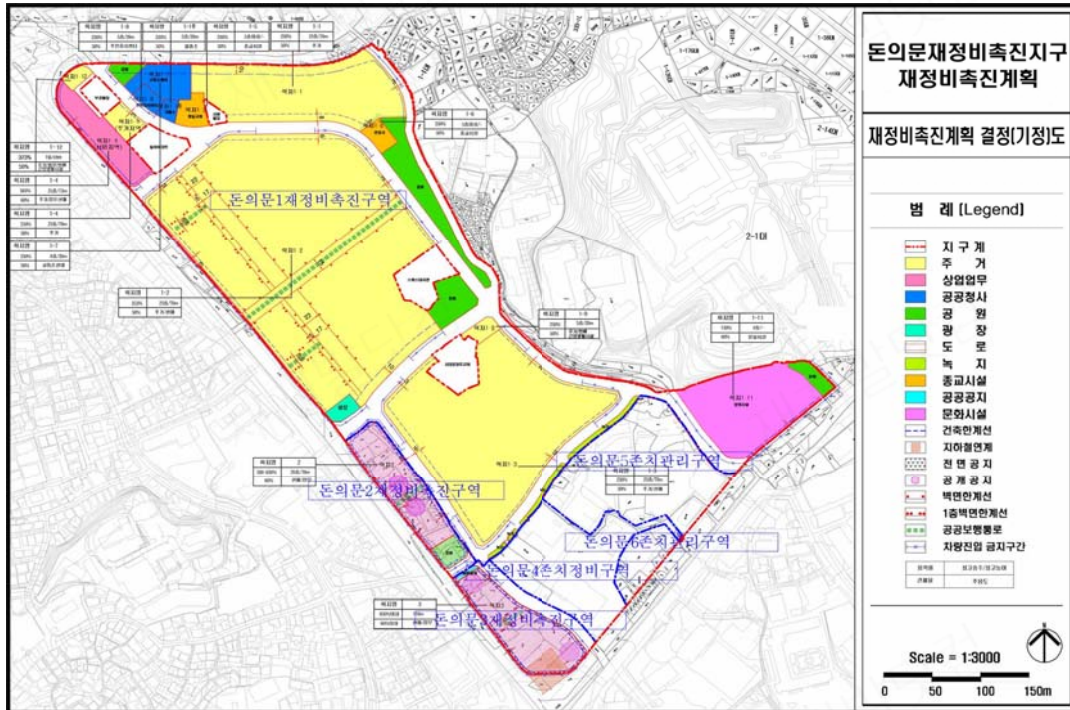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(기정)

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(변경)

